의대 교수 근무 축소 준법투쟁…진료·수술 차질 우려

전남대·조선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오늘부터 법정근로 52시간 근무
"전공의 법적 절차 땐 현장 이탈"
의대 개강일 또 연기…학사 파행
의료 붕괴 조짐에 환자들 '불안'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의료공백이 가시화 되고 있어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할 경우 교수들은 곧바로 사직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상급병원 의료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의료붕괴' 시작되나 = 25일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지만 곧바로 의료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상급병원인 의대 교수들이 법정근로 시간인 주 52시간 준법 투쟁에 나섬에 따라 당장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수술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교수 총 434명 중 315명(설문 응답자 386명)이 각 대학별로 진행된 대응 설문조사에서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정식 사직절차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 바로 의료공백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사직 절차를 위해서는 교수 개인이 사직서를 의과대학 학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조선대 의대교수평의회로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겠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양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각 대학 비대위 측은 1주일 가량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절차에 돌입하면 교수들도 집단행동을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교수들의 설명이다.

당장 문제는 25일부터 시작될 의대교수들의 '준법투쟁'이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축소운영 중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진들이 주 52시간만 근무하면 추가로 생기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의료현장에 추가적인 의료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급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의료 혼란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 당장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수술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4일 전남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25일에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보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여서 준법 투쟁한다"면서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졸속으로 자행된 의대 증원과 강제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지방의료 고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의대생, 전공의들과 우리(교수들)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더 이상의 파국적인 상황에 빠지기 전에 정부는 비이성적인 행정적 제재를 철회하고 신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해 진지한 협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학사일정 또 연기=전남대 의과대학이 개강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하는 등 학사일정을 재차 수정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오는 4월 15일 개강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4월 초 개강을 할 예정이지만,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실험 실습수업 등 학사 일정을 4월 중순이나 말까지 모두 연기했다.

전남대는 지난 2월 19일 일부 수업을 시작했으나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강을 25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연기한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처리가 되면 의대 학사일정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교수진이 없어 학사일정 파행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억대 시주금 가져간 여성 2심 무죄 이유는?

법원 "법적 지위 없는 개인사찰, 횡령 피해자 인정 어려워"

신도들의 시주금 1억 4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찰이 법적지위가 없어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여·69)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사찰에서 공양주(절에서 밥 짓는 일 등을 하는 사람)를 하며 재정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12년 부터 2020년까지 아들의 개인 보험료 납부를 위해 총 47회에 걸쳐 1억 4800여만원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 등으로 이체해 소비했다.

이에 사찰의 신도들은 A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찰을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서 법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 정관의 작성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총회 등 조직이 존재하지 않은 점, 사찰이 속한 종단의 운영 방식이 대부분 개인사찰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찰주지(승려)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했지만 "승려가 절을 지을 때 A씨 가족이 자금을 투입했고 수년간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살피면 경제공동체처럼 지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애인 등 명의 빌려 아파트 특공 전매 일당 실형·벌금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특별공급 아파트 전매알선 조직 총책 A(62)씨와 모집책 등 3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개부동산업자, 명의대여 장애인, 탈북민, 분양권을 전매한 자 등 18명에게는 벌금 5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광주시 동구와 화순군 등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탈북민명의로 특별 공급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 북한이탈주민이나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일정비율로 우선 할당돼 있고, 청약신청자도 적어 당첨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약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탈북민 또는 장애인들에게 각 700~8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공급 아파트는 분양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들은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1200~2000만원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으로 심각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관계 불법촬영 공유 전 초등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공유한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 시절인 지난 2021년 2월께 광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지인들의 단톡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단톡방에서 지인이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제공받아 시청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총 7회에 걸쳐 다수 여성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오랜기간 수차례 불법 촬영 영상물들을 공유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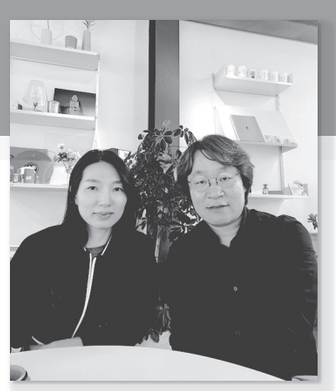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